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

# 산업발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

이렇게 운영합니다.



“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”

산업통상자원부 제2018-79호

##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

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,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### 외부사업 정의

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,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함

### 추진근거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상쇄), 제30조(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) 등

###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

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(KOC\*)을 상쇄배출권(KCU\*)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거래시장에서 거래

\* KOC(Korean Offset Credit) :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(1KOC=1tCO<sub>2</sub>-e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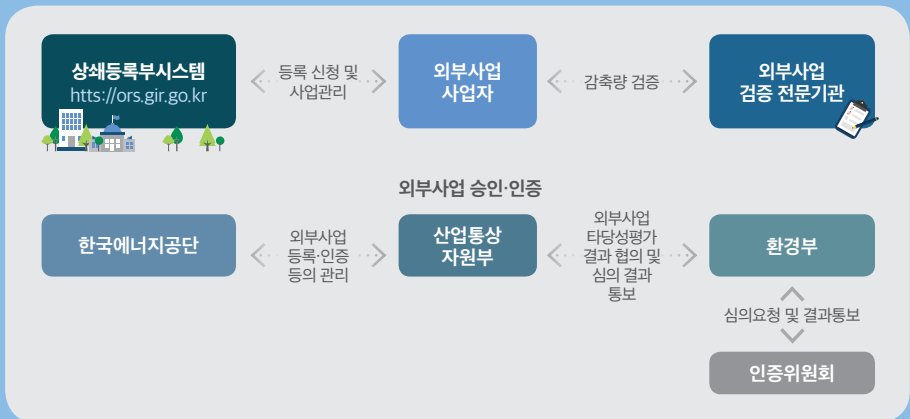
\* KCU(Korean Credit Unit) :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인정받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

### 산업통상자원부

- 외부사업 승인
- 방법론 승인 및 개정
-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·승인

### 한국에너지공단

-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
- 외부사업 방법론 검토
- 감축량 인증 검토



## 외부사업 주요 개정

2018년 5월 2일 『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』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,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

### I 승인 대상의 확대

외부사업 지침 제8조(승인대상)의 외부사업 승인 대상 확대

#### ⚠ 제8조(승인 대상)

제3항 2016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에 한해, 해당 사업의 잔여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전환 신청 할 수 있음



### I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

외부사업 지침 제9조(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료)의 외부사업 규모에 대한 기준인 외부사업 감축량 기준을 확대(\*기존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'600톤/년 →3,000톤/년' 확대)

#### ⚠ 단일 감축사업

- 일반감축사업 3,000톤/년 초과
- 소규모 감축사업 100톤/년 초과 3,000톤/년 이하
- 극소규모 감축사업 100톤/년 이하

#### ⚠ 묶음 감축사업

- 소규모 감축사업 15,000톤/년 이하
- 극소규모 감축사업 500톤/년 이하

### I 극소규모 감축사업

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자, 연간 감축량 100톤 미만의 "극소규모 외부사업" 으로 추진 가능

⚠ 극소규모 감축사업인 점을 감안하여,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인증유효기간으로 확대

⚠ 상쇄등록부시스템(ORS)에 등록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(한글파일 극소규모 양식)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

### I 프로그램 감축사업

프로그램 감축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확대

⚠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총괄사업자에 의해 추진 가능

### I 해외 외부사업 (국내기업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)

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

⚠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 가능

## 프로그램 감축사업

『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』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정의와 외부사업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음

###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?

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자발적 중·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

\* 외부사업 지침 제9조(승인대상 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) 제4항

### 프로그램 감축사업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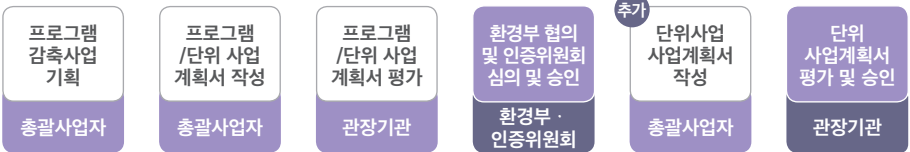
“프로그램 감축사업”은 단일, 묶음 감축사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며,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

Key Point

- ⚠ 프로그램 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(총 28년)동안 단위사업을 상시적 추가 가능
- ⚠ 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
- ⚠ 총괄사업자는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등록 및 단위사업 등록/인증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체계적 관리

#### 프로세스

##### 프로그램 감축사업



최초 승인 후 추가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 심의 생략

##### 단일감축사업



동일한 사업을 단일감축사업으로 추진시 동일한 사업 등록 프로세스를 매번 수행 필요

## 극소규모 감축사업

『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』에서 정의하고 있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정의와 외부사업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음

### I 극소규모 감축사업이란?

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사업을 의미하며, 타당성 평가 시 완료된 평가 기준 적용

\* 외부사업 지침 제9조(승인대상 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) 제1항~제3항

### I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주요 특징

“극소규모 감축사업”은 연간 100톤 이하의 감축사업을 관장기관의 장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제출 가능하며, 타당성 평가 시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

#### Key Point

- ⚠️ 연간 100톤 이하인 감축사업,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으로 신청 가능(연간 500톤 초과 불가)
- ⚠️ 극소규모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인증유효기간(인증유효기간 중 1회 이상 모니터링)
- ⚠️ 사업계획서는 상쇄등록부시스템(ORS)에 등록된 별도의 양식(한글파일 극소규모 양식)을 활용하여 제출 가능

#### 주요 양식

총 5개의 사업 유형에 대해 극소규모 감축사업 추진가능

####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

목재펠릿을 활용한  
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 
01A-001-Ver01

#### 태양광 발전을 통한 계통 연계 사업

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 
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 
01B-001-Ver01

####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 사용 사업

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 
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  
01B-004-Ver01

#### 고효율 설비 교체사업

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 
방법론  
03A-004-Ver01

####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

고효율 도로조명 설치사업의  
방법론  
03A-006-Ver01

“지속적으로 산업발전부문에 대한 다양한 극소규모 감축사업 유형 개발 예정”

## 외부사업 등록,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절차

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에 의거 외부사업 등록, 인증 및 방법론에 대한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

구 분	절 차	수행주체
1단계	외부사업 승인,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	외부사업 사업자
2단계	외부사업 승인,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방법론 승인 신청 접수	한국에너지공단 (산업통상자원부)
	외부사업 타당성 평가,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	한국에너지공단 (산업통상자원부)
	외부사업 타당성 평가,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결과 통보	한국에너지공단 (산업통상자원부)
	(수정·보완)	외부사업 사업자
	외부사업 타당성 평가, 검증결과 검토 및 방법론 검토 완료	한국에너지공단 (산업통상자원부)
	환경부 협의	환경부
3단계	승인 및 인증 심의 요청	환경부
	승인 및 인증 심의	인증위원회
	심의결과 통보 및 상세등록부 반영	한국에너지공단 (산업통상자원부)

## 산업발전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목록

“방법론”이란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, 가정,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. \*\*산업발전부문 상쇄제도 외부사업에 해당하는 방법론은 총 13건

번호	구분	방법론명
1	01A-001-Ver01	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
2	01B-001-Ver01	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
3	01B-003-Ver01	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
4	01B-004-Ver01	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사업의 방법론
5	02B-001-Ver01	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용가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
6	03A-001-Ver01	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
7	03A-002-Ver01	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
8	03A-003-Ver01	전력절감설비 설치사업의 방법론
9	03A-004-Ver01	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
10	03A-006-Ver01	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사업의 방법론
11	03A-008-Ver01	미활용 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전력생산 및 계통연계 사업의 방법론
12	03A-013-Ver01	주거용 시설의 심야 전기보일러에서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 사업의 방법론
13	11B-001-Ver01	가스절연개폐장치 검사용 SF6 회수-정제 및 재사용을 통한 SF6 감축사업의 방법론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

상쇄제도의 “참여” 는  
국내 탄소시장 “활성화” 에 초석이 됩니다.



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031-260-4503, 4509